

#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직원 비위 관련 조사결과

## 1. 조사개요

- (조사기간) 2018. 1. 8. ~ 1. 9./ 1.17. ~ 1.18.(4일)
- (조사인원/조사방법) □□□사무관 외 1명 / 실지조사
- (경위) 권익위에서 ±±±[한국문화관광연구원(이하 문광연) 연구위원]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 및 문체부 조치 요구(2018.12.26.)

### < 권익위 위반사실 통보 내용 >

- 「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」 제7조\* 규정 위반
  - \* 제7조 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 임직원은 출장비·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.
- 규정위반 내용
  - 연구성과점검 회의비(업무추진비) 사용내역에 당일 출장(휴가)자, 해당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등을 참석자로 포함 작성하여 집행

- (조사중점)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, ② 연구성과 점검회의 회의비(업무추진비) 부당집행 여부

## 2. 조사 결과

- ① (예산의 목적 외 사용) 회의계획서, 회의록, 영수증, 근무내역 등 관련 증빙을 대조·확인 결과, ±±±가 연구성과점검 회의비(업무추진비)를 연구와 전혀 무관한 직원 및 퇴직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식사비(점심)로 집행한 사실 확인\* \* '16년~'18년 기간: 9건/ 713,380원
  - 위 식사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명단(현직·퇴직 직원)을 기재하여 제출
    - ☞ 연구성과점검 목적의 회의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는 「문광연 임직원 행동강령」 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) 위반
- ② (업무추진비 부당집행) 「연도별 예산·회계·계약 관리지침(문광연)」에 따르면 연구성과점검 회의 시 업무추진비는 ▲ 해당연구과제의 연구기간, ▲ 1인당 20,000원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나,

- '16~'18년 9개 연구과제의 성과점검회의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면서, 해당 과제의 연구진 직원(타 과제 위촉연구원 포함)을 간담회에 참석시킨 후
  - 간담회 집행비용을 맞추기 위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해당일에 출장휴가인 연구원, 해당과제의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 등을 포함시켜 작성한 사실 확인\* \* '16년~'18년 기간: 32건/ 1,096,400원
- ☞ 「문광연 임직원 행동강령」 제10조(투명한 회계 관리)\* 및 「예산·회계·계약 관리지침」 위반

\* 제10조 (투명한 회계 관리)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③ (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불명확) 업무추진비의 월별 집행횟수(2회 내외) 및 연구진의 포함범위가 명확하지 않아, 월별 3~4회까지 집행이 가능한지, 타 연구과제 위촉연구원 등을 연구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과제 책임자별로 자의적으로 해석·운영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

### 3. 조치계획

- (문책요구) 「문광연 임직원 행동강령」 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), 제10조(투명한 회계 관리) 및 「예산·회계·계약 관리지침」을 위반하여 연구성과점검 회의비(업무추진비)를 부당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±±±에 대하여 '문책요구'(경징계 이상)
- (시정요구) 최근 3년간('16~'18) 연구 무관자 및 간담회 미참석자에 대한 부당집행액 환수\*
  - \* '16년~'18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금액: 1,809,780원(연구 무관자 등 713,380원, 연구진외 및 미참석자 1,096,400원)
- (개선요구)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성과점검 회의비 집행횟수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「예산·회계·계약 관리지침」에 마련 (통보)